

●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-463호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9월 1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개정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(협력센터)*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학교·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2제1항)
- 나. 협력센터의 업무로 협력 대상 중소기업 발굴, 협력 연구 기획 및 기술 중개·알선 등 연구지원, 협력 성과 조사·분석,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(안 제9조의2제2항)
- 다. 협력센터를 설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(안 제9조의2제3항)
- 라. 중소기업부장관이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 조사를 위하여 협력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학교·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제9조의2제4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5층 중소기업부 기술개발과
- 전자우편 : kng8190@korea.kr
- 팩스 : (044) 204-777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기술개발과(전화 (044) 204 - 7769, 팩스 (044) 204-777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